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지문채취 불응죄상 지문채취 주체 정비〉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1347호)

2026.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9. 11.
3. 회부연월일 : 2026. 9.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상 경범죄의 종류 중 지문채취 불응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범죄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의 주체에 현행 경찰공무원, 검사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관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 ----- -----.
1. ~ 33. (생략)	1. ~ 33. (현행과 같음)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u>경찰공무원</u> 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4. ----- ----- ----- -- <u>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원</u> ----- -----
35. ~ 41. (생략)	35. ~ 41.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u>

현행법상 지문채취 불응죄는 ①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②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⑤ 이를 거부하면 성립하고, 동 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한편,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기관의 조직체계가 개편될 예정임. 아울러, 같은 날 시행되는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제195조를 개정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고 있음.¹⁾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주체의 범위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됨.²⁾

1)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②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10. 2.]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6조 삭제 <2026. 8. 4.> [시행일: 2026. 10. 2.]

이에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지문채취의 주체에 포함함으로써,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등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지문채취 불응죄의 구성요건상 지문채취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고려하여 검사를 지문채취 주체로 계속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 등을 하는 때에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여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 10. 2.]

3)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수사자료표’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등을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즉, 현행법상 수사자료표의 작성·송부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직접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법무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기수사명령·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받은 고소·고발사건이나 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가. 공소의 제기

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법」 제2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소년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이하 “가정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성매매처벌법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이하 “아동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의 결정

2.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 항 제1호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即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⁵⁾으로서 「검찰청법」의 폐지에 따라 현행 규칙의 직접적인 위임 근거가 소멸하게 됨.

한편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밖의 사항도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⁶⁾.

따라서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만을 근거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하에서 검사에게 지문채취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둘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에

5)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수사·결정, 기록의 접수·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⁷⁾에 근거하여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경우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신원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송치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제245조의7에 근거하여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7)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⁸⁾.

즉, 송치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확인 등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를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공무소에 대한 조회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 직접 지문을 채취할 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셋째, 지문채취 불응죄는 적법한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을

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 10. 2.]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 전제가 되는 지문채취 권한의 주체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 범위, 개정 「형사소송법」상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수사요구 제도, 지문채취 불응죄가 형벌 규정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문채취 불응죄의 구성요건상 지문채취의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지문채취가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수사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수정의견과 같이 검사를 지문채취의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도 수정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으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 등을 위해 피의자 신원확인과 이를 위한 검사의 지문채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수정의견(안)>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33. (생략)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 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어 <u>경찰공무원이나 검사</u> 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5. ~ 41. (생략) ②·③ (생략)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 ----- ----- -----. 1. ~ 33. (현행과 같음) 34. ----- ----- ----- ----- <u>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u> ----- ----- ----- 35. ~ 4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u>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 ----- ----- -----. 1. ~ 33. (개정안과 같음)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 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어 <u>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u>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5. ~ 41. (개정안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문의처

02)6788-5349